

[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공고 제 2021 - 73호]

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기간제근로자(휴직대체인력) 채용공고

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(서울강남고용센터)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(직업상담원 휴직대체인력)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,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1년 7월 26일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

I 채용부문

고용형태	채용분야	담당업무	채용인원	근무 예정지
기간제 근로자	직업상담원 휴직대체인력	고용센터 업무 전반	1명	서울강남고용센터

- * (주소)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, 금강타워(지하철 2호선 선릉역 1번출구 50m, 1층 신한은행 건물)
* 대체 대상 근로자(휴직자)의 조기 복직 시 30일 전에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휴직자가 휴직을 연장할 경우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

II 응시자격

구 분	주 요 내 용
학력 및 전공	○ 학력 및 전공 무관
성별 및 연령	○ 무관
우대사항	○ 장애인, 저소득층(취업지원대상자/취업취약계층/한부모가족세대주) ○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(보훈) ○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○ 관련분야 경력자 및 교육이수자(하단 참조)
기타	○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III 전형절차 및 일정

○ 전형절차

서류 전형	⇒	면접 전형
▲ 응시자의 직무 적합성 여부 심사 ▲ 서류전형 기준,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		▲ 직업기초능력,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

○ 전형 일정

전형일정	일 시	비고
지원서 접수	2021.07.26~ 2021.08.02	• 워크넷 e-채용마당을 통해 온라인 접수 (우편, e-mail, 방문접수 불가) • 접수 마감일 18시 접수완료된 신청서만 유효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1.08.04.	•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
면접전형	2021.08.05	•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시 및 장소 공고 *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면접전형 합격자 발표	2021.08.06	•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

- 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
- ※ 최종합격자는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
- ※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예비합격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IV 우대사항

○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

구 분	우 대 사 항
교육 사항	○ 상담분야 관련 학교 교과목이나 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직업교육 이수자 (8시간 이상) ※ 관련 학교 교과목이란 직업학(직업상담, 심리학 포함), 심리학(산업심리학, 교육심리학 포함), 교육학, 사회학, 사회복지학(사회사업학 포함), 청소년학 등 고등교육과정의 관련 분야 교과목을 말함 ※ 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이란 실업교육, 기능교육, 직업훈련 등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말함
경력 사항	○ 고용센터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의 상담업무 5년 이상 경력자 ※ 상담업무 경력은 「직업안정법」 상 직업안정기관 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소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 상 학교,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의한 직업훈련기관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법인·시설, 「청소년기본법」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상담, 직업지도, 직업훈련 기타 직업 및 진로상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
자격 사항	○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

○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, 우대사항

구 분	우대사항
취업지원 대상자	○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점 또는 5점 부여

<서류·면접 전형>	☞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▲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▲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▲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▲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▲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▲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○ 저소득층: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면접의 5% 부여 ○ 장애인: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면접의 5% 부여 ※ 가점은 전형별 면접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, 지원자가 중복 해당될 경우 중복하여 가산
동점자 우대	○ 우리부 직업상담원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6조에 따라 고령자(55세 이상), 준고령자(50세 이상~55세 미만) 우성고용직종에 해당, 고령자 및 준고령자는 동점자 발생시 우대

V

접수서류

제출 서류	제출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①NCS입사지원서, ②경험 혹은 경력기술서, ③자기소개서, ④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동의서(서명날인 필), ⑤경력사항, 자격사항 등 증빙서류	원서접수 시 (워크넷 e-채용마당 제출) ※ 워크넷 ↓ e-채용마당 ↓ 지원서관리 ↓ 전형결과 ↓ 수험번호 확인가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장애인증명서 1부(해당자) * 장애인 증명서, 복지카드, 상이군경회원증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취업보호·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(해당자, 국가보훈처 발급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저소득층(취업지원대상자/취업취약계층) 확인 증명서 각 1부(해당자) 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가구단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% 이하 확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【가구원수별 ‘건강보험료’납입액(부과액) 상한 (원/월)]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1인가구</th><th>2인가구</th><th>3인가구</th><th>4인가구</th><th>5인가구</th><th>6인가구</th><th>7인가구</th></tr><tr><td>중위소득 (A)</td><td>1,757,194</td><td>2,991,980</td><td>3,870,577</td><td>4,749,174</td><td>5,627,771</td><td>6,506,368</td><td>7,389,715</td></tr><tr><td>소득인정액 (B=A×0.6)</td><td>1,054,316</td><td>1,795,188</td><td>2,322,346</td><td>2,849,504</td><td>3,376,663</td><td>3,903,821</td><td>4,433,829</td></tr><tr><td>보험료 (B×0.0312)</td><td>35,161</td><td>59,870</td><td>77,450</td><td>95,031</td><td>112,612</td><td>130,192</td><td>147,868</td></tr></table> ※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: 1인 증가시 883,347원씩 증가(예: 8인가구 8,273,062원)		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	중위소득 (A)	1,757,194	2,991,980	3,870,577	4,749,174	5,627,771	6,506,368	7,389,715	소득인정액 (B=A×0.6)	1,054,316	1,795,188	2,322,346	2,849,504	3,376,663	3,903,821	4,433,829	보험료 (B×0.0312)	35,161	59,870	77,450	95,031	112,612	130,192	147,868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위소득 (A)	1,757,194	2,991,980	3,870,577	4,749,174	5,627,771	6,506,368	7,389,715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득인정액 (B=A×0.6)	1,054,316	1,795,188	2,322,346	2,849,504	3,376,663	3,903,821	4,433,829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험료 (B×0.0312)	35,161	59,870	77,450	95,031	112,612	130,192	147,868																										
*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(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): 한부모 가족증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VI 근로조건

- 채용예정일: '21.8.9.(월)
 - * 근무기간: '21.8.9.(월)~'22.6.6.(월), 약 10개월
- 보수수준: 월 1,836,770원
 - * 정액급식비(14만원), 그 밖의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
 - * 4대 보험 가입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- 근무시간: 주 5일(월~금), 1일 8시간(09:00~18:00, 휴게 1시간)
- 근무 장소: **서울강남고용센터**(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, 금강타워)
 - * 지하철 2호선/분당선 선릉역 1번출구 50m, 1층 신한은행 건물
- 주요 업무: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4조(직업상담원의 직무)에 따른 고용센터 업무 전반
-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"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"에 따름

VII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자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(최종 채용 합격자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)하게 됩니다.
-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,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-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,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,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, 결격사유,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.
-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.

○ **결격사유**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(2013.7.1.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)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병역을 기피 중에 있는 자

○ 기타 **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-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고용관리과 담당자(☎ 02-3465-8405, 조현욱)